종사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no	항 목	전혀 없음	1회	2회 이상	거의 매일
1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예) 욕과 나쁜 말: 돼지야, 이 못생긴게, 멍청아, 바보, 나가 죽어라				
2	아동의 인격과 감정,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적이 있다. 예)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간식 없어!'				
4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예) 아동에게 종사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종사자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				
5	도구로(자, 회초리, 긴 막대 등)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6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둔 적이 있다.				
7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 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8	아동의 신체를 때린적이 있다. 예) 맨손이나 사랑의 매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행위				
9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동을 한적이 있다. 예) 아동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행위, 아동의 머리나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드는 행위,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등				
10	놀이 시간에 아이들간의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11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이 한 적이 있다. 예)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지 않거나, 식사 때가 되어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				
12	아동을 위험 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예)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등				
13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처지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예) 몸이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등				
14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예) 옷을 갈아입힐 때 사람들 앞에서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행위 등				
15	음란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일부 수정

□ 체크리스트 결과에 따른 자가 검진

분류	세부 내용
없다	당신은 아동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